

고 시 안 내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6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및환급에관한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및환급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제1조의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

제5조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제1호(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축석유량 포함) 내지 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로 하고, 제3항의 '정부비축석유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구입하는'을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2005년 3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부생연료유

가. 2010년 12월 31일 까지 : 리터당
17원

나. 2011년 1월1일 이후 : 리터당 23원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환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고, 제5항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며, 제6항 ‘영 제25조제4항’을 ‘영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의 ‘영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 ‘규칙21조’를 ‘규칙 제26조’로 하고, 제4항의 ‘부과금면제량의 석유(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축석유 포함)로’를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로 한다.

제23조의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를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월의 단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월의 실적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4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칙 제21조’를 ‘규칙 제26조’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제5호, 제17호 및 제17호의 2는 각각 제1호, 제5호, 제19호 및 제21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NO _____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

납부금액 : 원

납부기한 :

납부장소 : 은행

회계연도 :

회계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과 목 :

세입징수관 :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 년 월 일까지 상기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관 (인)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
류하게 됩니다.

[첨부] 1. 산출근거

2. 부과금 영수증 1set

[별지 제5호 서식]

환급신청서(갑)

※ 처리기간 :

4 근무일

① 환급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② 신청자구분

1.수출자	2.수 출 위탁자	3.완제품 공급자	4.제 품 사용자
-	-	-	-

③ 신청번호

기관코드	정수구분	일련번호
-	-	-

④신청일자		
	은행명	본(지)점
	점포코드	
⑤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사항		⑥물량	⑦단위	⑧환급율	⑨소요량	⑩환급물량 (ℓ or MT)	⑪단가	⑫금액
종별 제 품 수 출	일반수출							
	항공급유							
	선박급유							
	무상반출							
	미군납							
	소계							
제 품 수 출 원 료	석유화학용							
	노말파라핀							
	비료제조용							
	수출용							
	소계							
⑯전기사업용								
⑯비축용								
⑰발전사업용								
⑱집단에너지								
⑲합계								
		(20)석유 및 석유제품명	(21)부과금 납부액	(22)부과금 납부물량	(23) 단 가			
수수료		석유 및 석유제품명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						
없음		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석유수입 <input type="checkbox"/> 석유판매		부과금신고서				
부과금납부 의무자		(1)상호						
		(2)무역업등록번호						
		(3)소재지		(전화 :)				
		(4)성명(대표자)						
⑤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유예분 : 월 일까지)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점		
납부구분	번호	⑥수입신고 수리일 (판매일)	⑦수입신고 번호	⑧HSK 번호	⑨수량 (리터/톤)	⑩단가 (원)	⑪부과금 (원)	
남부	1							
	2							
	3							
	4							
	5							
	99	부과금계						
정수유예	1							
	2							
	3							
	4							
	5							
	99	부과금계						
면제	1							
	2							
	3							
	4							
	5							
	99	부과금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입신고필증(또는 선하증권) 사본(석유수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석유판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납부사실증명서(석유판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부과금을 납부한 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일련번호 :)

				<input type="checkbox"/> 납부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유예	확인서		2 일
				<input type="checkbox"/> 제외			
부과금 납부의무자	상호			성명 (대표자)			
	무역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입업자	상호			성명 (대표자)			
	무역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부과금 납부일자	년 월 일	납부장소					
통관 예정일	년 월 일	선하증권번호 (B/L)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 /선하증권번호	수입신고 수리 예정일(판매일)	HSK 번호	수량 (리터/톤)	단가 (원)	부과금 (원)	비고
계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유예·제외)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 귀하</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을 납부(유예·제외)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 <u>인</u></p> <p>비고 :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첨 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p>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